
2026년도 연구중심병원
(한미혁신성과창출R&D, 협력지원 R&D)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안요청서(RFP)

RFP ①

한미혁신성과창출R&D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연구중심병원육성R&D (한미혁신성과창출R&D)	사업유형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		
제안요청서명	한미혁신성과창출R&D				
공모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공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품목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공모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-	기술료 납부대상	X

▶ 지원목적

-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분야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미국의 연구중심병원 등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 및 첨단기술 조기확보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연구중심병원
-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기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
▶ 과제 구성 요건

- 단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국내 연구개발기관(산·학·연·병)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 협력기관으로써 해외기관 1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, “일반형”, “공동기관형”, “별도 과제형” 중 선택하여 신청
 - * 본 사업의 해외기관 : 해당 기관의 본원과 연구소의 주소지가 미국인 병원, 연구소, 대학
 - “일반형”의 경우, 해외기관은 “연구개발기관 외 기관”으로 구성
 - “공동기관형”의 경우, 해외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해외기관을 “공동연구개발기관”으로 구성
 - * “일반형”, “공동기관형”, “별도 과제형”에 따른 과제구성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공모안내서의 ‘II. 신청유형’, ‘III. 신청방법’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	연간 연구개발비	지원 예정 과제 수
한미혁신성과창출R&D	3년 이내	2,800백만원 이내 (1,400백만원 이내)	5개*

※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. 연도별 지원예산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* 총 5개 과제 중, 연구중심병원 중복 선정 없음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한미혁신성과창출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구자 자율적으로 ① 과학기술적 연구성과, ② 경제적 성과, ③ 플랫폼 고도화 분야의 성과 목표를 각각 1개 이상 제시 ①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시) 논문(IF 상위 5% 이내, 국제공저논문 최소 1건씩 필수 달성) 및 특허(국제특허등록) ② 경제적(사업화) 연구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시) 비임상·임상시험, 기술 이전, 제품화, 국내외 투자유치, 혁신 의료기술 개발, FDA 의약 임상 IND 승인, 디지털 의료기기 FDA 확증임상완료, 국제공동데이터 플랫폼 구축, First-in-Class 의료 핵심기술확보 등 ③ 플랫폼 고도화 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시) 플랫폼 기술확보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마일스톤 달성도 * 플랫폼 : 연구중심병원R&D 플랫폼 (유닛) 및 그 외 연구중심병원의 중점연구분야 보유 플랫폼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연구분야) 의약, 의료기기, 재생의료, 디지털 헬스, 의료시스템 등 ▪ (연구내용) 연구중심병원 R&D 플랫폼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활용 신규 근거 창출 및 임상실증 국제공동연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거기반 의약/의료기기 원천기술/제품 개발 : 바이오마커 발굴, 효능 평가 등 - 국가간 의료데이터셋 분석/응용의 결합 연구 - 다인종 데이터 시스템 구축/공유/활용 연구 - 신규 타겟발굴을 위한 연구자 주도 공동 임상(II) - 공동 허가임상: 연구중심병원 플랫폼 기술 기반 기업의 글로벌 임상 시험(SIT) - 병원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국제공동연구 ▪ (플랫폼 연계) 플랫폼 연계 및 확장 계획 제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HW) 연구시설 및 자원(인체유래물은행, 임상 시험기관 등) 활용 - (SW) 플랫폼 고도화 또는 연계확산 방안 제시 - (인력) 인력구성(총 00명, 연구전담의사 등 핵심 인력 필수 참여) - (성과) 플랫폼의 기술적 경쟁력과 관련된 성과 제시

※ 해외기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의 연구는 지양하며, 이를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및 연구내용 구성 필요

▶ 특기사항

-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, 해외기관의 참여방식에 따른 추진유형은 “일반형”, “공동기관형”, “별도 과제형”이 가능하며,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
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(’26.3.10.),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(’25.12.) 참조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
 - “일반형”, “별도 과제형”의 경우, 3책 5공에 해당하며,
 - “공동기관형”의 경우, 해외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 6공에 해당함
- 과제접수 시,
 - 연구개발계획서 내, 해외기관 및 해외연구책임자를 명시하고,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(기술협력, 역할분담, 연구비 활용계획 등)이 포함되어야 함
 - 본 연구의 주제 및 참여의사가 확인가능한 LOI, MOU 등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 제출 필수(해외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소속부서(장) 서명 포함)
 -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 규모는 기관의 역할과 공동연구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,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간접비는 직접비 총액의 38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연구계획서 내 지식재산권 관리계획(기여도 및 지재권 분배, 연구개발성과물 귀속 등), 외부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등 양 기관의 협력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
 - “일반형”의 경우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에 대한 IP를 포함한 국제계약서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필수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 - 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하며, 연구수행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약변경을 득해야 함(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’26.3.11.) 참조)
 - “공동기관형”의 경우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에 과제접수·신청, 협약,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야 함(위임장 제출 필수)
 - * 협약·계약, 연구성과 귀속/활용, 연구개발비 집행/정산, 연구개발과제 선정/평가, 보안 및 제재처분 등
 - “별도 과제형”의 경우, 해외기관이 해당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선정평가 시
 - (평가단위 구성) 과제 접수순서 및 접수과제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단위 구성
 - (구두 발표) 해외기관의 연구계획 실시간 발표 혹은 녹화영상(한글 자막 포함) 활용 가능 단, “공동기관형”, “별도 과제형”의 경우에 발표 혹은 녹화영상 제출 필수
- 협약 시,
 - “공동기관형”의 경우, 국제계약서, 비밀유지협약서, 보안서약서,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
-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친 후 실시(단, 최종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)
- 해외기관 공동연구책임자
 - 미국 소재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여야 함
 - 국내 소재 및 국내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가 단순 파견, 연구년 등으로 미국 협력기관 소속인 경우는 신청 불가

▶ 선정평가 기준

적용가점	-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기관이 확보한 자체연구비 활용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(최대 2조 단, 일반형과 공동기관형에 한함) * 자체연구비 활용비율: 연간지원 연구비 대비 해외기관이 확보·활용할 연구비 * 해외기관이 자체연구비를 활용하는 경우, 연구개발계획서 내 ‘자체연구비 활용계획’ 필수로 제시	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발표 평가	1. 연구계획의 적절성(30)	○ 사업목적과의 부합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부합함 -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목표 실현 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음
	<p>2. 플랫폼 및 연구자역량 (2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플랫폼의 구성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적절함 -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, 인프라, 기술 등을 갖추고 있음 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
	<p>3. 국제 공동연구 (3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미 공동연구의 필요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연구수행이 한미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함 ○ 한미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정도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미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 및 공동연구 수행의지 ○ 한미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 적정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참여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구성됨
	<p>4. 성과활용 기대효과 (2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 성과물의 적정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표에 부합함 - 해당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의 활용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가 병원이 기존에 구축한 개방형 R&D 플랫폼을 확장·고도화하는데 충분히 기여함 - 연구결과가 한국의 보건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건강증진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②

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R&D(협력지원 R&D)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R&D (협력지원 R&D)	사업유형 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형 R&D		
제안요청서명	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(협력지원 R&D)				
공모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공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품목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공모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지정	TRL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	-	기술료 납부대상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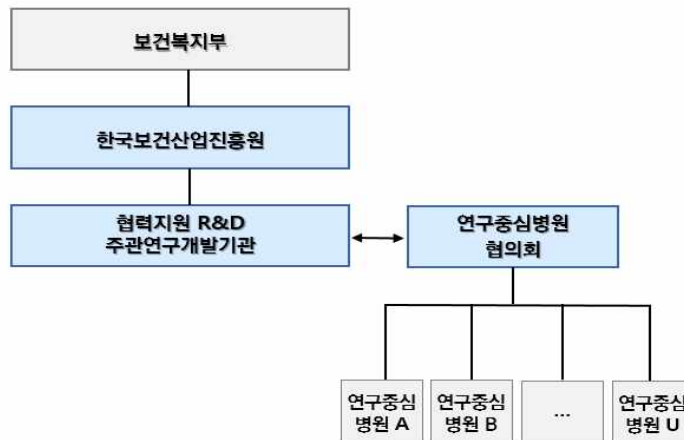
▶ 지원목적

- 연구중심병원간의 연구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협력아젠다 발굴·개발 등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병원 간 균형 있는 연구 성장 기반 마련

▶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연구중심병원
 -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연구기관 구성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<협력지원 R&D 추진 체계(예시)>



▶ 지원규모

지원분야	지원기간 (1차년도)	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	지원 예정 과제 수
협력지원 R&D	5년(3+2) 이내 (6개월 이내)	1,000백만원 이내 (500백만원 이내)	1개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6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6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구중심병원당 1개 과제 신청 가능하며, 평가결과 평균 70점(100점 만점) 미만은 순위에 관계없이 탈락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지원분야	성과목표	연구내용(예시)
협력지원 R&D	1단계 ('26~'28년) ① 연구중심병원 간 네트워크 활동 연간 4회 이상 ②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아젠다 발굴 연간 4건 이상 ※ ①, ②의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 함	○ 연구중심병원 간 연구역량 결집을 위한 국내·외 네트워크 활동 - 연구중심병원이 공동 참여하는 심포지엄, 협의회, 세미나 등 개최

	2단계 (‘29~’30년)	① 연구중심병원 간 네트워크 활동 연간 4회 이상 ②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아젠다 개발 연간 2건 이상 ③ 연구중심병원 협력지원을 통한 질적 성과 도출 1건 이상 (지표 및 목표 자율적 제시) <지표예시> 연구중심병원 R&D 백서, 공동연구 협약체결 달성률, 수혜자 만족도 등 ※ ①, ②, ③의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 함	- 연구중심병원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○ 연구중심병원 간 연구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아젠다 발굴·개발 -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수요 조사 실시 - 협력수요 분석을 통한 병원 간 협력아젠다 개발 ○ 연구중심병원 R&D 발전방향 마련 - 연구중심병원 R&D 관련 국내·외 현황, 성과 등 조사·분석 - 분석기반으로 연구중심병원 R&D 발전방향 수립
--	-------------------	--	--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**특기사항**

-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간 총 연구개발비(정부+민간) 중 25%를 민간부담으로 매칭 부담하여야 함
- 1단계 및 2단계 연구개시 시점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하며, 단계별 연구수행 중에 연구중심병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각 단계 연구기간 종료시까지 연구수행 가능

▶ **연구데이터관리계획(DMP) 제출 관련 공통사항**
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(Data Management Plan, DMP) 제출 필요
 -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과제 신청시 DMP를 제출하여야 함(계획서 첨부 양식)
 - * 연구데이터란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, 임상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임상·역학 데이터를 포함함
 - 수집된 연구데이터는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·등록보존기관인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(Clinical & Omics Data Archive, CODA)에 등록·기탁해야 함
 - 인간(사람)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, CODA에 등록·기탁 가능한 동의를 구득해야 함(동의서 필수 내용은 과제 선정 후 CODA와 협의 필요)
 - 본 사업을 통해 생산·수집되는 데이터는 「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」의 용어표준(Korea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, KR CDI)을 준용해야 함(고시에 없는 데이터는 SNOMED CT(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)를 준용할 것을 권고함)
 - 평가단계별(선정, 단계, 최종)로 DMP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,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
 - 최종보고서 제출 시 CODA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함
 - 등록·기탁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즉시 공개가 원칙

▶ **일반사항**
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
 -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(정량지표)을 제시
 -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
 - ※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
- 일반적인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」 참고

▶ **선정평가 기준**

적용가점	해당사항 없음
------	---------

구분	평가항목(배점)	
	대항목	소항목
서면·발표 평가	1. 연구개발 계획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- 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와 지원내용의 적절함 ○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-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(2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- 추진전략·방법, 추진체계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○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
	2. 연구개발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○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
	3. 연구개발 성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의 성공가능성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-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, 질병극복,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